

수도권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5184(2021.2.13.)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유흥시설5종 및 홀덤펍에 대하여는 본 조치로 적용함

1]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
2] 적용 대상

- (대상) 중점관리시설 6종

< 중점관리시설 6종 >

- ▲ 유흥시설 5종(콜라텍 추가 방역지침 적용 의무화) 및 홀덤펍
- ▲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▲ 노래연습장 ▲ 실내 스탠딩공연장
- ▲ 식당·카페 ▲ 파티룸

※ 지방자치단체 별로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을 제외하고, 대상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,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,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3] 적용 기간

- 2021년 3월 15일(월) 0시 ~ 3월 28일(일) 24시

4]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**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,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식당·카페, 파티룸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**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**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준수 여부 현장점검**(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**과태료 부과**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**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*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**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**

*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(참고)**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 경고·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,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,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.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-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- 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
-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p>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</p>	<p>■ '콜라텍'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 text-align: center;"> <p><콜라텍 추가수칙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물,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•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및 안내 •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</div> <p>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* 수기명부 작성 불가, 유흥종사자도 작성</p> <p>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, 유증상자 출입금지</p> <p>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p> <p>■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</p> <p>■ 방역관리자 지정</p> <p>■ 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 *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</p> <p>■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딜러,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</p> <p>■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(최소1m) 거리 유지</p> <p>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p> <p>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</p> <p>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**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, 딜러 포함</p> <p>■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</p>	<p>■ '콜라텍'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 text-align: center;"> <p><콜라텍 추가수칙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물,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•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•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</div> <p>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- 전자출입명부 이용(의무) * 수기명부 작성 불가, 유흥종사자도 작성</p> <p>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p> <p>■ 마스크 착용</p> <p>■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*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, 딜러 포함</p> <p>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p> <p>■ 춤추기 금지(댄스홀/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), 테이블·룸 간에 이동 금지</p> <p>■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</p> <p>■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에는 시설 이용 금지</p>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춤추기(댄스홀/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),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 ■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유지 ■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, 아래 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(이동설치 불가) ·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·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·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교체 ·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(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)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실내 흡연 금지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, 아래사항 모두 준수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·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·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(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)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실내 흡연 금지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■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■ 공연, 노래부르기, 음식제공 등 금지 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■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, 노래부르기 금지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■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■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에는 시설 이용 금지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노래연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영업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■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(대장작성) 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■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■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■ 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, 다만 4㎡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 ■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- 코인노래방은 4㎡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■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에는 시설 이용 금지
실내 스탠딩 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 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공연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■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■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■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 <p>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■ 스탠딩 관람 금지, 배치된 좌석(2m, 최소 1m 간격)에 착석하여 공연 관람 ■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에는 시설 이용 금지
식당·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<p>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</p>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■ 식당·카페 모두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식당·카페 모두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가능 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 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■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(강력 권고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파티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영업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■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 이상) 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■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(개별 방 면적대비 8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■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이용인원 제한 준수 (개별 방 면적대비 8㎡당 1명)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 이상) 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■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에는 시설 이용 금지